

## 임시주주총회 결의사항 (현대투자파트너스)

- 일 시 : 2023년 9월 12일(화요일) 오전 9시
- 장 소 :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194(연지동) 현대그룹빌딩 동관 3층 회의실
- 회의목적사항  
《부의 안건》  
제 1호 의안: 정관 변경의 건  
제 2호 의안: 임원 퇴직금 지급 규정 변경의 건
- 결의사항  
제 1호 의안: 정관 변경의 건

### 정관 변경 전.후 비교표

변경 전	변경 후
<p><b>제34조의 2 (이사·감사의 회사에 대한 책임감경)</b> 1.회사는 주주총회 결의로 이사 또는 감사의 상법 제399조에 따른 책임을 그 행위를 한 날 이전 최근 1년 간의 보수액(상여금과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한 이익 등을 포함한다)의 6배(사외이사의 경우는 3배)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 면제할 수 있다. 2.이사 또는 감사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와 이사가 상법 제397조(경업금지), 제397조의2(회사기회유용금지) 및 상법 제398조(자기거래금지)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.</p>	<p><b>제35조(이사·감사의 회사에 대한 책임감경)</b> 상법 제399조 및 제414조에 따른 이사 또는 감사의 책임을 이사 또는 감사가 그 행위를 한 날 이전 최근 1년 간의 보수액(상여금과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한 이익 등을 포함한다)의 6배(사외이사는 3배)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 면제한다. 다만, 이사 또는 감사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와 상법 제397조, 제397조의2 및 제398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</p>

제 2호 의안: 임원 퇴직금 지급 규정 변경의 건

규정 변경 전후 비교표

변경 전	변경 후
(신설)	<b>제9조 (퇴직금 중간정산)</b> 제3조에 불구하고, 임원의 퇴직금 중간정산 요청이 있는 경우 이사회의 결의로 해당 임원이 퇴직하기 전에 해당 임원의 계속 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. 이 경우 제4조의 재임연수는 중간정산을 한 날로부터 새롭게 기산한다.

2023년 9월 12일

현대투자파트너스 주식회사  
대표이사 김 민 엽 (직인생략)